

광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500213(본소), 2021가단50263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72696(본소), 2021나72702(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50021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문병욱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지웅
변론종결 2021. 10. 5.
판결선고 2021. 12.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2,206,000원 및 그 중

가. 55,550,000원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1. 1.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9,996,000원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1)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5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8. 1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등과 소외 회사가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 9. 3. 피고와 위 사업 중 위 스마트공장에 설치할 의료자동화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에 관한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고, 그 후 원고는 2020. 9. 7. 피고에게 선금 55,55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5,05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제작계약상 이 사건 설비는 반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 위 반자동 부분은 추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에서 자동화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생산성 문제를 들며 위 설비의 반자동 부분 중 일부를 자동화하여 추가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와 피고는 2020. 9. 말경부터

이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 시작하여 위와 같이 반자동 부분 중 일부를 자동화하여 추가 제작하고 그에 따른 추가 제작비용은 위 고도화사업시 그 사업비용에 포함시켜 소외 회사로부터 받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으나, 그 후 예상과 달리 상당한 추가 제작비용이 소요되게 되자, 당장 지출되는 위 추가 제작비용의 부담주체 내지 분담비율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논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11. 11. 및 같은 해 11. 13.경 피고에게 ‘당초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내용대로 제작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양자 간 협의가 끝난 추가 제작 부분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당초 제작계약 내용대로 하자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므로 위 제작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가 2020. 11. 19.경 및 같은 해 11. 25.경 피고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가 2020. 11. 20.경 및 같은 해 11. 27.경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 제작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위 제작계약상 납품기한인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설비를 납품하지 않자, 원고는 2020. 12. 3.경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더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제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작계약의 해제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위 제작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11. 30.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설비를 제작·납품하지 않았는바, 따라서 위 제작계약은 앞서 본 원고의 2020. 12. 3.경 계약해제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원고는 2020. 11. 11. 앞서 본 추가 제작과 관련하여, 그 제작비용 약 3,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1,500만 원씩 지출하여 추가 제작을 완료하되,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1,500만 원은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1,500만 원은 추후 원고가 2차 고도화사업 비용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지급하며, 설비 제작은 2020. 12. 7.로 연기한다고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당초의 제작계약 내용대로만 이행하라고 통보하는 등 위 합의를 위반하였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2020. 11. 30.이 경과하면 피고에게 그 지체책임을 물을 것이 명백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부득이 위 제작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제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위 제작계약은 위 합의를 위반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 의해 해지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2020. 11. 11.자 합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2020. 11. 11. 합의가 되었다거나 기타 추가 제작 여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작계약은 앞서 본 피고의 이행거절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및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상회복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지급받은 55,55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지급의무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체상금은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납품기한 다음날인 2020. 12. 1.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원고가 위 제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설비 제작 및 납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계약해지를 표시한 시점과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납품기한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 점, 원고도 피고로부터 위 제작계약을 어느 정도라도 이행 받고 이를 정산하는 것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계약관계에서나 그 동안 지출된 유·무형의 비용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제작계약의 납품기한까지 피고의 이행 여부를 기다려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위 납품기한이 경과한 2020. 12. 1. 위 제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본 지체상금의 종기는 2021. 3. 6.[원고가 다른 업체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기간 7일(2020. 12. 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 이 사건 제작계약상 제작 및 납품 기간 89일(2020. 12. 8.부터 2021. 3. 6.까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06,656,000원[위 제작계약상 1일당 지체상금 1,111,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계약금액 111,100,000원 x 앞서 본 지체상금율 10/1000) x 위 지체일수 96일(2020. 12. 1.부터 2021. 3. 6.까지)]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62,206,000원(위 기지급받은 55,550,000원 + 위 지체상금 106,656,000원) 및 그 중 위 55,550,000원에 대하여는 기지급받은 다음날인 2020.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1.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체상금 중 39,996,000원[2020. 12.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 5.까지 36일간 발생한 지체상금액(위 1,111,000원 x 36일)]에 대하여는 위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작계약은 제2의 가.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에 의해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작계약 및 추가 합의에 따른 피고의 기성고는 124,08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이므로, 원고는 위 제작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68,530,000원(위 124,080,000원 - 기지급받은 55,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5,55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E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이행선급금 보증증권을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작계약이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그 손해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청구한다. 따라서 원고는 정산금의 지급 및 손해 중 일부의 배상으로 피고에게 98,530,000원(위 68,530,000원 +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정산금 관련 주장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주장으로 선회한다 하더라도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거나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정산금의 지급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계약내용

1. 계약일자 : 2020. 9. 3.
2. 계약금액 : 10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기간 : 2020. 9. 3.부터 2020. 11. 30.까지(89일)

제3조(범위)

1.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C 의뢰기 자동화 설비라인

계약 관련 구성은 기계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도입기업²⁾이 승인한 첨부 견적서와 같다. 추가로 설비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으로 설비에 PC를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생산 수량, 생산조건, 에러코드 등)을 위한 통신장치 및 프로토콜, 관련된 기술문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지원 사업 절차(중간점검, 최종점검, 최종감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갑³⁾의 현장 방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4조(설비제작 기간)

1. 설비제작 기간은 2020. 9. 3.부터 2020. 11. 30.까지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 조건)

1. 계약금액 대금지급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선금 50,500,000원 : 정부지원금 입금 후 2주 이내
- * 중도금 25,250,000원 : 도입기업 부담금 중도금 입금 및 중간점검 후 2주 이내
- * 잔금 25,250,000원 : 도입기업 부담금 잔금 입금 및 최종감리 완료 후 2주 이내
- * 합계 10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추가 비용 발생시 갑과 무관하며 을⁴⁾과 도입기업이 합의하여 본 계약과 상관없이

2) 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3)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4)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을과 도입기업이 별도 진행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1.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동안 계약된 의료 자동화기기 설비제작을 완성 납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기업의 검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3. 본 계약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을과 도입기업의 원인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발생시 정부의 환수 정책에 따라 을과 도입기업은 갑에게 환수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상호 간 계약 성립 후 임의대로 계약의 중단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기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

제9조(지체상금)

을은 본 계약 이행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계약금 내에서 을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10/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과 도입기업이 인정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끝.

1) 한편,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제1의 나.항 중 ‘2021. 3. 7.’은 청구원인 내용에 비추어 ‘2021. 3. 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